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28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 의 자 : 고민정 · 조인철 · 장철민
오세희 · 강경숙 · 박상혁
백승아 · 권향엽 · 박정현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시 지방공무원 및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대상을 선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사기관의 협조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여부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받았으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 사유 회신 불가를 통보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8 신설 등).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교원으로서”를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서”로 한다.

제61조의2의 제목 중 “의원면직”을 “의원면직·명예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원면직”을 각각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원면직”을 “의원면직·명예퇴직”으로 한다.

제7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8(의원면직·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무직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사무직원이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명예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70조의5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명예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서-----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u>의원면직</u> 을 신청한 교 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u>의원면직</u> 을 신청한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 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 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1조의2(<u>의원면직·명예퇴직</u> 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 ----- <u>의원면직</u> 또는 <u>명예퇴직</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 는 <u>의원면직</u> 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u>의원면직</u> 을 허용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④ ----- --- <u>의원면직</u> 또는 <u>명예퇴직</u> --- ----- ----- <u>의원 면직</u> 또는 <u>명예퇴직</u> ----- -----.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4.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⑤ -----의원면직·명예퇴직-----

-----.

제70조의8(의원면직·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무직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사무직원이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명예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에 해당

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지방공무원법」

	<u>제70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u> <u>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u> <u>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u> <u>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 명예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